



기술이전 계약서의 이해와 실 사례 분석

기술이전의 정의(기술이전촉진법)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종류

1. 양도 : 기술의 소유권 일체를 넘겨 줌

cf) 아파트 매매

2. 실시권 허여 : 기술의 사용권을 허락함

가. 전용실시권 : 실시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 소유자도 사용금지

나. 통상실시권 : 실시권자가 비독점적으로 사용,

제3자에게 실시권 재 허여 가능

cf) 아파트 전세 or 영화관 입장료

3. 기술지도 : 애로기술 자문, 비교적 간단한 기술적 문제 해결



기술이전계약서의 구성 1

1. 표제

2. 전문 : 당사자 표시, 계약목적 / 범위, 계약체결 의사 등

* 당사자 명칭과 본점 소재지(의무이행자, 관할법원 결정기준임)는 등기부 및 특허원부 상의 기재와 일치해야 함.

3. 본문

① 정의조항

② 실시허락조항 : 실시허락, 수출, 하청실시, 재실시허락, 실시권설정등록

③ 실시료 조항 : 실시료, 최저실시료, 실시료의 계산.보고.지불, 장부 등의 보관, 회계감사 등



기술이전계약서의 구성 2

④ 특약사항

- ⓐ 허락특허의 유지 ⓑ 실시권 허락자의 보증책임 ⓒ 실시조항
- ⓓ 개량발명 ⓔ 원재료, 부품 등의 구입 ⓕ 경쟁품 등의 취급제한
- ⓖ 부쟁의무 ⓧ 비밀유지 Ⓣ 특허표시, 실시표시 등 Ⓤ 침해조항
- ⓚ 최혜대우조항
- ⑤ 실시기간과 해지
- ⓐ 계약기간 및 갱신 ⓑ 해지조항 ⓒ 종료조항

⑥ 일반조항

- ⓐ 불가항력 조항 ⓑ 양도조항 ⓒ 통지조항 ⓔ 계약의 변경
- ⓔ 완전합의조항 ⓕ 분쟁의 해결

4. 후문

말미문언, 당사자의 표시, 기명날인(서명), 계약체결 년 월일



표지 및 계약 당사자 표시

- 계약상대방의 법인격과 계약체결 권한 유무를 확인하고, **당사자표시**

- 개인 : 성명,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약체결 능력 여부 확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등)

- 법인 :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소(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유무확인,
법적 제약 여부확인(공동대표여부, 회사정리 절차, 파산, 해산, 청산절차 등)

최소한, 계약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토록 요청



제1조 용어의 정의

- 당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1. "계약기술"이란 "계약특허"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갑에게 이전될 기술이 특허가 아닌 경우 이전 기술의 범위를 상술 또는 별지 첨부함)
 2. "계약특허"라 함은 (갑)이 현재 출원중인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호(발명의 명칭 : ○○○○) 및 이에 기초하여 취득할 특허권을 말한다. (단, 출원중인 산업체산권이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을)은 본 계약상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모든 제품(또는 장치, 설비 등)을 말하고, 중간체 또는 원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중간체나 원료를 말한다.
 4. "생산개시"라 함은 (을)이 "계약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제품"을 최초로 생산한 것을 말하며, 그 해당일을 "생산개시일"이라 한다.



제2조 실시권의 내용

- 실시권의 형태를 정의하고 그 범위와 재실시권 여부를 합의함
 -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계약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을)에게 국내 전용실시권을 허여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또는,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계약제품"에 관하여 "계약기술"을 실시하는 대한민국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
 - ② 본조 제①항의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을)이 독점적으로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또는, 본조 제①항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란 (갑)이 (을)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 ③ (을)은 본 계약 발효일 이후 "계약특허"에 대한 출원, 보정, 등록, 유지, 방어, 실시권 설정 및 명의이전 등에 소요되는 일체비용을 부담한다.
 - ④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동 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갑) 또한 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내용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 하여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전용실시권과 같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전용실시권과 달리 실시하는 권리를 전유하는 것은 아님
성격	배타적 성질을 갖는 물권적 권리	채권적 권리
설정등록	효력발생요건	-
재실시허락	특허권자의 승낙 필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승낙 필요
자기실시권	불가	가능



제3조 국외실시

- 국외실시에 관한 조항

제 3 조 (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계약기술”을 “국외실시”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생산개시일

- 계약기간을 정의하고 생산개시일의 기한 및 통보의무 명기

제 4 조 (계약기간 및 생산개시일 통보)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9조 제③항 또는 제13조 제①항의 각호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00년 ○월 ○일까지로 한다.(또는, 본 계약은 본 계약체결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제9조 제③항 또는 제13조 제①항의 각호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약특허"의 특허권이 종료되는 연도말(특허기간 연장을 포함)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생산개시"를 하여야 하며, 생산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을)에 "생산개시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개시일"은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기할 수 있다.



제5조 실시대가

(을)은 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1. (선급기술료) (을)은 선급기술료로 금000원정(₩000)을 (갑)에게 아래 표의 일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일자(기한)	금액	지급조건
1차	본 계약 체결 시	₩	
2차		₩	
계		₩	

2. (경상기술료) (을)은 경상실시료로 "생산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 연도말까지 매년 본 "계약제품" 총매출액의 0%를 제6조에 의거 (갑)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3. 본 계약에 따라 행해진 모든 지불은 여하한 이유라도 (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경상기술료의 계산

- ① (을)은 제5조의 경상기술료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분기로 계산하여
당해 경상기술료를 익년도 3월말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 ② (을)은 경상실시료 지급시에 공인회계사에 의해 검증된 경상기술료 계산서와 매출액이
산출된 근거가 기술된 서면보고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갑)은 경상기술료 계산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계관련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회계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갑)에게
기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오류등으로 발생한 차액이 5% 이상인 경우 검사를 위한
제반비용은 (을)이 별도로 부담한다.



기술료의 종류

1. 선급기술료 : 기술이전 계약 시에 지불하는 금액
2. 경상기술료 : 매출액 등에 로열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받게 되는 금액
(ex. 매출액의 3%)
 - * 보통의 경우 선급기술료 + 경상기술료 의 방식으로 계약
1. 정액기술료 : 매출액에 상관없이 기술료의 금액을 정하는 방식 (일시불 또는 분할 가능)
2. 정률기술료 : 총매출액, 순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 %를 기술료로 지급
 - * 특허양도의 경우 정액 기술료 일시불 방식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입금 후 명의 양도함
1. 최대기술료 : 실시권자가 지불할 기술료의 최대금액을 미리 약정함 (기업에 유리)
2. 최저기술료 : 실시권자가 지불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미리 약정함 (대학에 유리)



기술료의 결정(기술가치평가) 방법

1. 시장접근법 : 해당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기술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조사하여 산정
 -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해야 함. 거래정보에 접근가능해야 함
2. 비용접근법 :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제반 개발비용을 합산한 후 현재가치화 함
 - 계산이 비교적 용이, 이론적 타당성의 부족, 보완자료로 활용
 - 연구비 + 인건비 + 연구시설 사용 등 기반비용
3. 수익접근법 :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가치화 함
 - 기술도입기업의 활동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초과소득의 현재가치로 평가된 무형가치 중에서 기술의 기여분에 상당하는 가액
 - 응용성과 유연성이 높음

• 수익접근법 적용방법

1. 대상기술 분석 및 자료조사
2. 시장규모 및 매출액 추정
3.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측
4. 순현금흐름의 산정
5. 기술기여율 결정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사례

구분	2007	2008	2009	합계
시장규모	1,000	2,000	3,000	6,000
침투율(%)	10	20	30	
매출액	100	400	900	1,400
총비용	제조원가	60	240	540
	감가상각	5	20	45
	판관비	20	65	100
	소계	85	325	685
세전순이익	15	75	215	305
법인세	3	15	43	
당기순이익	12	60	172	244
총현금유입액	17	80	217	314
총현금유출액	40	40	0	
순현금흐름(CF)	-23	40	217	234
할인율(%)(i)	20%	20%	20%	
할인현금흐름	-19	28	126	134
기술기여도	25%			
기술의 가치	-4.79	6.94	31.39	33.55

기술수명(3년), 할인율(20%), 기술기여도(25%) 적용

$$V = \frac{CF_1}{(1+i)} + \frac{CF_2}{(1+i)^2} + \frac{CF_3}{(1+i)^3} + \dots$$

V: 기술가치, CF: 현금흐름, I: 할인율

구분	2007	2008	2009	합계
선금금	10			10
로열티(매출액)	2.67%			
경상기술료	2.67	10.68	24.03	37.38
경상기술료의 현가	2.23	7.42	13.91	
기술료합계	12.23	7.42	13.91	3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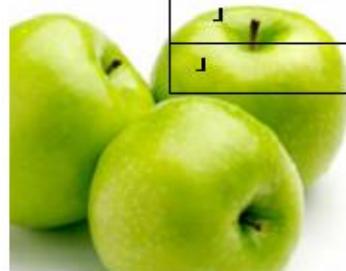
선금금	10			10
로열티(순이익)	16.0%			
경상기술료	1.87	9.35	26.79	38.00
경상기술료의 현가	1.56	6.49	15.50	
기술료합계	11.56	6.49	15.50	33.55



AUS Consultants의 업종별 로열티율 사례

	(%)				↑
	◆	◆	◆	◆	
	4.7%	3.6%	25.0%	0.5%	72
	11.7%	7.5%	40.0%	0.3%	47
(1)	5.3%	4.7%	25.0%	0.4%	63
, ■	5.5%	5.0%	17.0%	0.0%	90
■ ■	10.6%	8.0%	50.0%	2.0%	19
	2.9%	2.8%	7.0%	0.3%	32
■	5.8%	4.8%	77.0%	0.1%	280
	7.0%	5.1%	40.0%	0.1%	328
■	5.0%	5.0%	20.0%	0.5%	86
/	5.2%	4.5%	25.0%	0.5%	84
	4.7%	4.0%	15.0%	1.0%	35
■	4.3%	4.0%	15.0%	0.5%	132
↑	4.6%	3.2%	30.0%	0.0%	78
	5.2%	4.0%	15.0%	0.2%	68
■	10.5%	6.8%	70.0%	0.0%	119
■	6.2%	4.5%	77.0%	0.0%	1,533

AUS Consultants, "Annual Review of Industry Royalty Rates," *Licensing Economics Review*, Moorestown, New Jersey: AUS, 2001. 12, p.8.



순매출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1. 판매할인 (Sales Discount)
2. 판매환입(Sales Returned)
3. 판매간접세 (Indirect Taxes on Sales)
4. 보험료 (Insurance Premium on Sales)
5. 포장비 (Packing Expense on Sales)
6. 운반비 (Transport Expense on Sales)
7. 판매수수료 (Sales Commissions)
8. 광고선전비 (Advertisement Fee)
9. 설치비 (Installation on Expenses)
10. 관세 등



AUS Consultants, "Annual Review of Industry Royalty Rates," *Licensing Economics Review*, Moorestown, New Jersey: AUS, 2001. 12, p.8.

제7조 기술의 개량

(A안)

(을)이 본 계약의 기간 중 (갑)이 취득하는 "계약특허"의 개량기술에 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실시권을 취득할 것을 희망하는 때는 (갑) 및 (을)은 당해 개량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본 계약의 추가 및 당해 추가에 따른 제5조에서 정한 대가 및 기타의 조건변경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한다.

(B안)

1. (산업재산권의 취득) (갑)이 "계약기술"로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실시권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특허의 출원, 보정, 등록, 유지, 실시권설정 및 명의이전 등을 위한 서류제출, 수속 등에 대하여 쌍방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기술의 개량) (갑) 또는 (을)의 임원 및 피용자가 "계약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 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된 산업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 개량조항에 관한 사항은 쌍무적이고 균형 있게...
- 일방의 연구개발능력이 월등한 경우에는...

제8조 신의성실의 의무

제 8 조 (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면책

- ① (갑)은 (을)에 의한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해 (을)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을)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제3자가 "계약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갑)과 (을)은 상호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 ③ (을)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약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계약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출원 중인 "계약특허"에 대하여 거절결정의 확정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계약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갑)은 기지급 받은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제 10 조(비밀보장)

(을)은 "계약기술"이 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 12 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갑)은 기지급 받은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을)은 기술자료를 (갑)에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1. 통보기한내에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생산개시일" 전이라도 (을)이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생산개시일"이후 (을)이 조업중단 등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제5조에 따른 실시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치 아니할 경우.
4.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②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을)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을 실시도록 하거나 "계약제품"의 생산을 행하지 아니한다.



- 해제** :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듬(원상회복)
- 해지** :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고, 소급하지 않음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 1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명칭사용)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중요사항의 변경)

(을)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착오는 (을)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7조 분쟁해결

제 17 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중재의 특징과 장점

1. 분쟁해결의 구체적 타당성 : 전문가의 판단과 결정
2. 간이 및 신속성
3. 비용의 저렴성
4. 비밀의 보장성 : 비공개 진행
5. 계속적 거래의 가능성 : 중재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전제
6. 결과의 실행가능이 큼
7. 확실성 및 종국성 : 사법적 판단과 동일하게 구속력 있고 확정적임.



제18조, 제19조

제 18 조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 ② 본 계약은 (갑)과 (을)간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갑)과 (을)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 19 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계약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항목	실시권자(기업)의 입장	실시권허락자(대학)의 입장
계약제품	계약기술이나 허여 산업재산권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한정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계약기술이나 허여 산업재산권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계약기술	관련기술에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기술만 추출하여 도입한다.	부메랑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기술만 포함시키도록 정의한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	계약일 현재 계약지역에 등록된 유효한 특허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출원 중인 것 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것도 포함시키도록 정의한다.
계약지역	될수록 넓게 정의한다. 수출희망지역도 포함시킨다.	계약지역을 좁게 정의한다. 수출지역을 제한한다.
순매출액	공제항목을 넓게 한다.	공제항목을 적게 한다.
판매의 기준	실제판매, 또는 수금을 기준으로 한다.	수주, 계약, 출하 및 매출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	연 1회 정도로 한다.	기술료의 산출 및 지급의 기간을 단축하도록 정의한다.
효력발생일	필요한 인, 허가 등 모든 절차의 완료 후에 발효되도록 한다.	서명일 또는 필수불가결의 강행적 절차의 완료시점에 발효되도록 한다.



성공적인 기술이전계약을 위해...

첫째, 기술 도입자(기업)가 희망하는 **기술이전의 방식을 파악하라**. 기술의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을 필수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기업이 있다. 이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제3의 기업에게 이전할 수 없으므로 기술가치 평가 또한 신중해야 한다.

둘째, 특히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로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해당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전체 연구비용과 인건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전 시 정부부처에 반납하게 될 기술료 및 특허관련 비용을 모두 분석한 후 소속 대학 규정에 의해 기술이전 보상금을 분배시 책임 연구자에게 얼마의 보상금이 배정될 수 있는지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셋째, **전용실시권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 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결합 형태로 기술료를 결정하되**, 실시기간 및 실시범위를 제한하고, **최저기술료제를 적용하면** 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크로스 라이센스로 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시장접근법에 의한 경상기술료의 적용은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매출액에 의해서 기술의 가치를 매기는 힘으로 비용접근법이나 수익접근법으로 기술가치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기업이 매출실적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넷째, **통상실시권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결합형태로 기술료를 결정하되, 전용실시권에 비해 그 금액과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보통의 경우 기업은 전용실시권을 희망하면 소도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낮추고자 하는데, 이때 그 대안으로 통상실시권 방식의 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으로 계약할 경우, 대학은 제3의 기업에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부담을 덜 수 있다.

다섯째, **경상기술료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상기술료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기하고,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또한 경상기술료 점검을 위해 대학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계관련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



계약서의 중요성 !

캐나다의 통신업체가 계약서에 잘못 찍힌 쉼표 하나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213만달러(약 20억 원)를 지불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케이블전화 서비스업체인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은 2002년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州)의 전신 주 9만1000개를 임차하면서 전신 주 사용권 위탁업체인 알리안트와 계약서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영어로 된 계약서 14페이지에

‘(계약은) 합의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그 이후 5년간, 계약종료 1년 전까지 서면통지가 없는 한 유효하다’

는 문장이 문제가 됐다. 두 번째 쉼표가 없었다면 계약은 10년간 유효했을 텐데, 쉼표가 들어감으로써 1차 5년이 지난 뒤 알리안트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알리안트는 5년 기간이 끝나는 2007년 계약을 종료하고, 3배 오른 사용료를 조건으로 새 계약을 맺겠다고 통보했다. 당연히 10년은 임대보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로저스 입장에선 뒤통수를 때리는 얘기가 아닐 수 없었다. 새 계약시 213만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 로저스 사는 언어학자까지 동원해서 쉼표가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유권해석 기관인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최근 “쉼 표의 법칙에 근거해서 본다면 1차 5년 기간이 끝난 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며 알리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분쟁은 법조계에서 ‘텔레-코마(tele-comma)’란 별칭까지 얻어가며 유명한 연구 사례가 됐다. 캐나다와 미국의 몇몇 로스쿨(법과대학원)에선 법조문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례로까지 연구되고 있다.

